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53126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민식, 김윤석, 조경윤, 양어진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권혜진, 박경란

4.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정돈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용철, 이동영

변 론 종 결 2021. 6. 10.(피고 1, 2에 대하여) 2021. 10. 14.(피고 3, 4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2,541,571원 및 그중 1,512,232,022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4. 28.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의 2019. 7.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7. 10. 접수 제191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1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의 2019. 7.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7. 22. 접수 제200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1 목록 기재 제1, 3, 4, 5, 8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2019. 10.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11. 7. 접수 제304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아래 [표1]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을 지칭할 경우 [표1]의 순번 1번 신용보증약정을 ‘①신용보증약정’, 순번 2번 신용보증약정을 ‘②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약정에 따라 보증상대처인 중소기업은행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 위 각 약정에 기초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각 연대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표1]

순번	약정일	보증서번호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원)	증거
1	2015. 11. 10.	E	1,700,000,000	2023. 11. 9.	2,000,000,000	갑1-1,2
2	2016. 7. 4.	F	270,000,000	2017. 7. 4.	300,000,000	갑2-1,2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약정에서 ‘기보’는 원고, ‘본인’은 피고 A, ‘연대보증인’은 피고 B을 가리킨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11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의 “기보가 정하는 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이후 연 10%이다.

제3조 보증료 등의 납부

③ 본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기보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기보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기보

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기보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G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정보 제외)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10.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제10조 상환범위

①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기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기보가 정한 율

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보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기보가 정한 율을 말합니다.

④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기보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1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과 아래 [표2] 기재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개별 여신거래약정을 지칭할 경우 [표2]의 순번 1번 여신거래약정을 ‘①여신거래약정’, 순번 2번 신용보증약정을 ‘②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실행받았으며, 피고 B은 위 각 약정에 기초한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표2]

순번	약정일	계정과목명	여신실행일	여신만료일	여신(한도)금액 (원)	증거
1	2015. 11. 16.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015. 11. 17.	2023. 11. 9.	2,000,000,000	갑 제1호증의 3
2	2016. 7. 4.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6. 7. 4.	2017. 7. 4.	300,000,000	갑 제2호증의 3

4) 이후 ②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은 261,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9. 7. 4.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3]과 같은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개별 근저당권을 지칭할 경우 [표3] 순번 1번 근저당권을 ‘①근저당권’, 순번 2번 근저당권을 ‘②근저당권’, 순번 3번 근저당권을 ‘③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자들인 피고 C에게 ①, ②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③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표3]

순 번	근저당권설정대상 부동산의 별지1 목록 순번	근저당권설정 계약체결일	등기접수일 등기번호 (각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1~5항	2019. 7. 8.	2019. 7. 10. 제19101호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주식회사 H(이하 ‘H’이 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C
2	1~13항	2019. 7. 17.	2019. 7. 22. 제20060호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H 근저당권자 피고 C
3	1, 3, 4, 5, 8~12항	2019. 10. 29.	2019. 11. 7. 제30490호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D

다.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9. 10. 18.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9. 11. 21. 원고에게 위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10. 11.부터 2019. 11. 6.까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계 7,787,530원을 지출하였다.
- 2) 원고는 2020. 4.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 한도 내에서 ①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1,224,000,000원, 이자 23,865,194원의 합계액인 1,247,865,194원과

②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261,000,000원, 이자 4,279,070원의 합계액인 265,279,070원을 변제하여 합계 1,513,144,264원(= 1,247,865,194원 + 265,279,070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②신용보증약정의 미환급보증료 912,242원을 ②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3)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①신용보증약정의 추가보증료는 2,521,770원이다.

[인정 근거] I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I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0. 4. 1. 현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구상채권액은 아래 [표4]와 같으므로, 피고 A,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2,541,571원(= 대위변제일 현재 구상채권액 합계 1,514,754,041원 + 채권보전비용 7,787,53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합계액인 1,512,232,02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4. 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4. 28.까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11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가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4]

순번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원)	손해금(원)	추가보증료(원)	합계(원)
1	①신용보증약정	1,247,865,194	0	2,521,770	1,250,386,964
2	②신용보증약정	264,366,828	249	0	264,367,077
합계(원)		1,512,232,022	249	2,521,770	1,514,754,041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3.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피고 A에 대한 제2항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주위적 주장). 설령 달리 본다 하더라도 ②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5조가 정한 사유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이미 성립된 것이고(제1예비적 주장),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③ 원고는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일에 성립한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출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제2예비적 주장),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3) 그런데 피고 A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C과 ①, ②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D와

③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거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을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C은 ①, ②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는

③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일인 2020. 4. 1. 발생한 것으로서 ①, ②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피고들

피고 A은 무자력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위변제일은 2020. 4. 1.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 대위변제 이전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한편 갑 제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9. 4. 16., 2019. 4. 17., 2019. 4. 18., 2019. 5. 15., 2019. 5. 17., 2019. 5. 18., 2019. 6. 5., 2019. 6. 1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또는 이자 납부를 연체하였고, 위 각 연체 중 일부는 ①, ②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19. 9. 10.에 이르러서야 정리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대출채무 연체와 상환이 반복된 사실, 피고 A의 신용정보 공동망 조회서에는 ③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9. 8. 19. 산재, 고용보험료 체납정보가, 2019. 10. 1. 국세 체납정보가 각 등록되었고, 위 국세 체납으로 2019. 9. 4.에는 별지1 목록 제1, 3, 4, 6, 8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 때문에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그 법률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당시, 즉 채권자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32964 판결 참조).

2) 피고 A의 적극재산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2019. 7. 8., 2019. 7. 17., 2019. 10. 29.) 및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14. 현재)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2020. 8. 20. 기준 시가 합계 5,602,050,2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각 부동산에 있는 시가 합계 1,841,020,000원 상당의 기계기구가 있고, 그 시가 합계액은 7,443,070,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적극재산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및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의 기준 시가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피고 C은, 위 가)항의 적극재산 외에도 피고 A의 손익계산서(을다 제4호증)상 2019. 1. 1.부터 2019. 7. 31.까지 당기순이익 62,160,381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 7. 31. 현재 재무상태표(을다 제5호증)상 3,589,763,001원의 재고자산과 430,950,000원의 무형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①, ②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위 당기순이익,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한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참조). 그뿐 아니라 을다 제5호증은 피고 A의 재무상태표 전체가 아닌, 부채를 제외한 자산 항목에 관한 부분만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서, 을다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 주장과 같은 적극재산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A의 소극재산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음은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또한 소극재산 산정 시 피고 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 피고 A의 소극재산 내역이 ①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7. 8. 당시 [별지2]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7,888,442,203원인 사실, ②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7. 17. 당시 [별지3]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7,897,716,003원인 사실, ③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10. 29. 당시 [별지4]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7,922,462,526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14. 현재 [별지5]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7,598,473,74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2019. 7. 8., 2019. 7. 17., 2019. 10. 29.) 및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14. 현재)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무액이 330,679,527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A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9. 7.경까지 피고 A의 세무기장, 세무조정 업무를 하였으나 피고 A으로부터 수수료 중 20,356,3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다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20,356,300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주장의 채무액 중 24,155,000원은 H의 피고 C에 대한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채무액이며, 286,168,227원 또한 H의 피고 C에 대한 통관수수료 및 차용금 채무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다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A과 H은 별개의 법인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20,356,300원을 초과하는 소극재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2019. 7. 8., 2019. 7. 17., 2019. 10. 29.) 및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14. 현재) 피고 A의 피고 D에 대한 채무액이 166,634,547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주장의 채무액은 H의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다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A과 H은 별개의 법인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A의 피고 D에 대한 채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성립과 피고 C, D의 악의 추정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2019. 7. 8., 2019. 7. 17., 2019. 10. 29.) 및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14. 현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 A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인정되고, 채무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5) 항쟁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②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압류, 가압류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①, ②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②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 가압류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가)항의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이 ①, ②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은 ①, 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20,356,300원의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채권’과 ‘피고 C의 H에 대한 24,155,000원의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채권’, ‘피고 C의 H에 대한 286,168,227원의 통관수수료, 대여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다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다.

② 그런데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은 2018년경부터 이미 피고 C에 대한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지급을 연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피고 C이 피고 A의 세무 업무를 처리해 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①, ②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이 새로이 감소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참조). 피고 C의 주장에 따르면 ①, 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피고 A에 대한 채권액은 20,356,300원에 불과한 반면,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350,000,000원(= 200,000,000원 + 150,000,000원)에 이르고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은 제3자인 H에 대한 채권이다.

(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D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실상 같은 회사인 H이 피고 D로부터 페인트 도료를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③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하기에 이를 승낙하고

③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H에 70,000,000원 상당의 도료를 추가로 공급하였을 뿐,

③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3, 4, 5, 8 내지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는

③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③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피고 D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D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참조).

(나) 피고 D는 H이 피고 A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나,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H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는 점만으로는 H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피고 A을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이 새로이 감소되는바, ③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A이 아닌, 제3자 H에 관한 채권이다.

(라) ③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③근저당권설정부동산에는 앞서 살펴본 피고 A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대한민국의 2019. 9. 4.자 압류등기 외에도, 원고의 2019. 10. 2.자 가압류등기, 음성군의 2019. 10. 21.자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C, D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 피고 C은 ①, ②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는 ③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이승연, 판사 김동호

별지1

부 동 산 목 록

1. 충청북도 음성군 J 공장용지 16117㎡
2. 충청북도 음성군 K 공장용지 6009㎡
3. 충청북도 음성군 J
충청북도 음성군 K에 있는 L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M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755.53㎡
4. 충청북도 음성군 J
충청북도 음성군 K에 있는 N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M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 공장(엘피지 저장창고) 45.1㎡
5. 충청북도 음성군 J
충청북도 음성군 K에 있는 O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M
철골조 판넬지붕 3층 공해공장
1층 372㎡ 식당
2층 372㎡ 사무실
3층 360㎡ 사무실

6. 충청북도 음성군 P

충청북도 음성군 K에 있는 Q동호

철골조 슈퍼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792㎡ 공장

1층 2900㎡ 공장

1층 237.64㎡ 공장

1층 4.464㎡ 공장

1층 42.75㎡ 자전거거치장

1층 46.4㎡ 사무실

7. 충청북도 음성군 P

충청북도 음성군 K에 있는 R동호

샌드위치조립식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경비실 23.04㎡

8. 충청북도 음성군 J

충청북도 음성군 K에 있는 S동호

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공장(위험물 저장소) 20㎡

9. 충청북도 음성군 J

충청북도 음성군 K에 있는 T동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창고) 197㎡

10. 충청북도 음성군 J

충청북도 음성군 K에 있는 U동호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위험물저장소) 54.48㎡

11. 충청북도 음성군 J

충청북도 음성군 K에 있는 V동호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위험물저장소) 27.24㎡

12. 충청북도 음성군 J

충청북도 음성군 K에 있는 W동호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공장(창고) 68.25㎡

13. 충청북도 음성군 X 임야 1910㎡. 끝.

[별지2] 2019. 7. 8. 현재 소극재산표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	원고	1,522,541,571	이 사건 구상금
2	중소기업은행	5,907,290,595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3	국민건강보험공단	87,899,070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이 채무자인 청주 지방법원 충주지원 Y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 5. 13.자 교 부청구금액표 중 납부기한이 2019. 7. 8. 이전인 체납보 험료의 합계액(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2019. 7. 8.까지의 발생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연체금은 제외 한다, 이하 별지 3, 4에서도 같다)은 87,899,070원(= ① 건강·요양보험료 34,214,050(= 2,487,690 + 3,440,420 + 2,644,280 + 3,385,960 + 3,290,140 + 2,994,880 + 1,839,000 + 1,138,900 + 2,758,360 + 2,758,360 + 1,876,120 + 2,820,600 + 2,779,340)원 + ② 연금보험료 35,936,550(= 1,804,550 + 3,034,040 + 2,714,900 + 2,680,620 + 2,680,620 + 2,951,160 + 2,733,720 + 2,733,720 + 2,733,720 + 2,733,720 + 2,158,360 + 2,546,340 + 2,715,540 + 2,715,540)원 + ③ 고용보험료 6,499,190(= 420,140 + 675,770 + 687,570 + 330,880 + 329,760 + 407,200 + 431,850 + 415,080 + 415,080 + 415,080 + 407,430 + 368,680 + 400,230 + 403,420 + 391,020)원 + ④ 산재보험 료 11,249,280(= 747,590 + 1,073,070 + 716,760 + 607,200 + 605,800 + 701,240 + 770,370 + 1,294,160 + 1,294,160 + 739,890 + 538,690 + 500,910 + 531,690 + 627,730 + 500,0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17,683,620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2020. 5. 8.자 교부청구금액 중 납부기한이 2019. 7. 8. 이전인 국세의 합계액(원고의 주장과 제출 된 증거만으로 2019. 7. 8.까지의 발생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별지 3, 4에서도 같다)은 17,683,620(= 11,450,630 + 3,535,060 + 2,697,930)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5	근로복지공단	0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를 한 금액 중 지급일이 2019. 7. 8. 이전인 체당금 합계액은 18,707,120(= 4,000,000 + 3,659,830 + 4,000,000 + 3,174,290 + 3,873,000)원 이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A으로부터 2018. 4. 6. 4,000,000원을, 2019. 12. 1. 500,000원을, 2019. 6. 27. 14,207,120원을 각 회수하여 위 체당금 전액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Z 주식회사	11,668,709	원금 11,645,80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7. 8.까지 연 6%로 계산한 이자 22,909원(갑 제18호증)
7	AA	8,000,000	갑 제19호증
8	충청북도 음성군	535,380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충청북도 음성군의 2020. 7. 1.자 지방세 교부청구금액 중 납부기한이 2019. 7. 8. 이전인 지방세의 합계액(원 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2019. 7. 8.까지의 발생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가산세,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별지 3, 4에서도 같다)은 535,380(= 132,420 + 139,610 + 119,890 + 143,4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9	AB	20,138,646	갑 제17,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AB의 퇴직일은 2019. 8. 31.이나, 2019. 7. 8. 당시 채무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이 성립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 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 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0,138,646원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함 이 타당하다.
10	한국전력공사	0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9. 7. 8. 당시의 전기요 금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AC	39,153,007	갑 제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AC의 퇴직일은 2019. 11. 12.이나, 2019. 7. 8. 당시 채무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이 성립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9,153,007원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함이 타당하다.
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7,389,379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3	I	135,785,926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4	피고 C	20,356,300	
합계(원)		7,888,442,203	

[별지3] 2019. 7. 17. 현재 소극재산표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	원고	1,522,541,571	이 사건 구상금
2	중소기업은행	5,907,290,595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3	국민건강보험공단	95,284,990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이 채무자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Y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 5. 13.자 교부청구금액표 중 납부기한이 2019. 7. 17. 이전인 체납보험료의 합계액은 95,284,990원(= ① 건강·요양보험료 36,993,390(= 2,487,690 + 3,440,420 + 2,644,280 + 3,385,960 + 3,290,140 + 2,994,880 + 1,839,000 + 1,138,900 + 2,758,360 + 2,758,360 + 1,876,120 + 2,820,600 + 2,779,340 + 2,779,340)원 + ② 연금보험료 39,652,090(= 1,804,550 + 3,034,040 + 2,714,900 + 2,680,620 + 2,680,620 + 2,951,160 + 2,733,720 + 2,733,720 + 2,733,720 + 2,733,720 + 2,158,360 + 2,546,340 + 2,715,540 + 2,715,540 + 2,715,540)원 + ③ 고용보험료 6,890,210(= 420,140 + 675,770 + 687,570 + 330,880 + 329,760 + 407,200 + 431,850 + 415,080 + 415,080 + 415,080 + 407,430 + 368,680 + 400,230 + 403,420 + 391,020 + 391,020)원 + ④ 산재보험료 11,749,300(= 747,590 + 1,073,070 + 716,760 + 607,200 + 605,800 + 701,240 + 770,370 + 1,294,160 + 1,294,160 + 739,890 + 538,690 + 500,910 + 531,690 + 627,730 + 500,020 + 500,0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17,683,620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2020. 5. 8.자 교부청구금액표 중 납부기한이 2019. 7. 17. 이전인 국세의 합계액은 17,683,620(= 11,450,630 + 3,535,060 + 2,697,9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근로복지공단	0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를 한 금액 중 지급일이 2019. 7. 17. 이전인 체당금 합계액은 18,707,120(= 4,000,000 + 3,659,830 + 4,000,000 + 3,174,290 + 3,873,000)원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이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A로부터 2018. 4. 6. 4,000,000원을, 2019. 12. 1. 500,000원을, 2019. 6. 27. 14,207,120원을 각 회수하여 위 체당금 전액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Z 주식회사	11,685,892	원금 11,645,80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7. 17.까지 연 6%로 계산한 이자 40,092원(갑 제18호증)
7	AA	8,000,000	갑 제19호증
8	충청북도 음성군	2,301,050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충청북도 음성군의 2020. 7. 1.자 지방세 교부청구금액 중 법정기일이 2019. 7. 17. 이전인 지방세의 합계액은 535,380(= 132,420 + 139,610 + 119,890 + 143,460 + 1,765,6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9	AB	20,138,646	갑 제17,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B의 퇴직일은 2019. 8. 31.이나, 2019. 7. 17. 당시 채무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이 성립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0,138,646원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함이 타당하다.
10	한국전력공사	0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9. 7. 17. 당시의 전기요금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AC	39,153,007	갑 제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C의 퇴직일은 2019. 11. 12.이나, 2019. 7. 17. 당시 채무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이 성립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9,153,007원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함이 타당하다.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7,494,406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3	I	135,785,926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4	피고 C	20,356,300	
합계(원)		7,897,716,003	

[별지4] 2019. 10. 29. 현재 소극재산표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	원고	1,522,541,571	이 사건 구상금
2	중소기업은행	5,907,290,595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3	국민건강보험공단	110,099,750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이 채무자인 청주 지방법원 충주지원 Y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 5. 13.자 교 부청구금액표 중 납부기한이 2019. 10. 29. 이전인 체납 보험료의 합계액은 110,099,750원[= ① 건강·요양보험료 43,783,170(= 2,487,690 + 3,440,420 + 2,644,280 + 3,385,960 + 3,290,140 + 2,994,880 + 1,839,000 + 1,138,900 + 2,758,360 + 2,758,360 + 1,876,120 + 2,820,600 + 2,779,340 + 2,779,340 + 2,249,300 + 2, 341,380 + 2,199,100)원 + ② 연금보험료 45,642,430(= 1,804,550 + 3,034,040 + 2,714,900 + 2,680,620 + 2,680,620 + 2,951,160 + 2,733,720 + 2,733,720 + 2,733,720 + 2,733,720 + 2,158,360 + 2,546,340 + 2,715,540 + 2,715,540 + 2,715,540 + 2,180,500 + 2,180,500 + 1,629,340)원 + ③ 고용보험료 7,739,900(= 420,140 + 675,770 + 687,570 + 330,880 + 329,760 + 407,200 + 431,850 + 415,080 + 415,080 + 415,080 + 407,430 + 368,680 + 400,230 + 403,420 + 391,020 + 391,020 + 295,090 + 295,090 + 259,510)원 + ④ 산재보험료 12,934,250(= 747,590 + 1,073,070 + 716,760 + 607,200 + 605,800 + 701,240 + 770,370 + 1,294,160 + 1,294,160 + 739,890 + 538,690 + 500,910 + 531,690 + 627,730 + 500,020 + 500,020 + 406,540 + 406,540 + 371,8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27,843,640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2020. 5. 8.자 교부청구금액표 중 납부기한이 2019. 10. 29. 이전인 국세의 합계액은 27,843,640(= 11,450,630 + 3,535,060 + 2,697,930 + 1,382,710 + 1,458,470 + 1,498,430 + 5,820,4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근로복지공단	0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를 한 금액 중 지급일이 2019. 10. 29. 이전인 채당금 합계액은 18,707,120(= 4,000,000 + 3,659,830 + 4,000,000 + 3,174,290 + 3,873,000)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A으로부터 2018. 4. 6. 4,000,000원을, 2019. 12. 1. 500,000원을, 2019. 6. 27. 14,207,120원을 각 회수하여 위 채당금 전액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Z 주식회사	5,667,886	원금 5,454,329원 + 위 원금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중주지원 AD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2019. 10. 29.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3,557원(갑 제18호증)
7	AA	8,000,000	갑 제19호증
8	충청북도 음성군	6,813,930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충청북도 음성군의 2020. 7. 1.자 지방세 교부청구금액 중 납부기한이 2019. 10. 29. 이전인 지방세의 합계액은 6,813,930(= 132,420 + 139,610 + 119,890 + 143,460 + 1,765,670 + 58,370 + 55,000 + 117,410 + 4,282,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9	AB	20,138,646	갑 제17, 21호증의 각 기재(2019. 10. 29.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채당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 이전임)
10	한국전력공사	0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9. 10. 29. 당시의 전기요금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AC	39,153,007	갑 제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C의 퇴직일은 2019. 11. 12.이나, 2019. 10. 29. 당시 채무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이 성립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9,153,007원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함이 타당하다.
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8,771,275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3	I	135,785,926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4	피고 C	20,356,300	
합계(원)		7,922,462,526	

[별지5] 2021. 10. 14. 현재 소극재산표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	원고	1,799,632,194	1,522,541,571원 + 1,512,232,022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4. 28.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21. 10. 1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77,090,623원
2	중소기업은행	5,123,483,678	4,595,222,041원 + 281,770,595원에 대하여는 연 7.358%의, 29,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7.974%의, 911,520,000원에 대하여는 연 11%의, 3,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7.162%의 각 비율로 2020. 4. 16.부터 2021. 10. 14.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528,261,637원(갑 제14호증)
3	국민건강보험공단	153,404,540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이 채무자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Y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 5. 13.자 교부청구금액은 153,404,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1. 10. 14. 현재에도 위 채무액은 비슷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4	대한민국	80,358,940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2020. 5. 8.자 교부청구금액은 80,358,9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1. 10. 14. 현재에도 위 채무액은 비슷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5	근로복지공단	35,272,940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를 한 2020. 6. 11. 무렵 피고 A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35,272,940원의 체당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1. 10. 14. 현재에도 위 채무액은 비슷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6	Z 주식회사	6,873,742	5,996,866원 + 5,454,329원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1. 10.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76,876원(갑 제18호증)
7	AA	8,000,000	갑 제19호증

순 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8	충청북도 음성군	30,526,180 (= 24,926,180 + 5,600,000)	갑 제20, 2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충청북도 음성군의 2020. 7. 1.자 지방세 교부청구금액은 24,926,180원, 2020. 7. 8.자 과태료 교부청구금액은 5,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1. 10. 14. 현재에도 위 채무액은 비슷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9	AB	10,138,646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138,646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10,000,000원(갑 제21호증)
10	한국전력공사	21,956,226	18,563,01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1. 10.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93,216원(갑 제22호증)
11	AC	53,913,154	39,153,007원 + 위 원금에 대한 2019. 11. 26.부터 2021. 10.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760,147원(갑 제24호증)
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8,771,275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2019. 10. 29. 현재 위 항목의 채무액은 118,771,2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1. 10. 14. 현재에도 위 채무액은 비슷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13	I	135,785,926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9. 10. 29. 기준 I에 대한 채무액은 135,785,9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1. 10. 14. 현재에도 위 채무액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14	피고 C	20,356,300	
합계(원)		7,598,473,741	

